



제 429국회 (정기회)
제 9 차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원회 구성 변경 및 교육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34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제3항)	3
2. 교육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1항)	6
3. 개정안 부칙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9. 12.

3. 회 부 일 : 2025. 9.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연구센터를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어 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내부적 정책 이해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임.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원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사실상 교원단체 위원밖에 없는 상황임. 그러나 교원단체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 교원단체 몫 위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단체 위원 몫을 확대하는 등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이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제3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교육부 차관을 제외시키고,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 ----- ----- -----.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교육부차관</u>	<u><삭 제></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u>2명</u>	5. ----- ----- <u>3명</u>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국가교육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1명의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자로 구분됨¹⁾.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서 교육부차관을 제외시키고,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려는 것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 현장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나, 교육부는 국교위 당연직 위원에서 교육부 차관이 배제된다면, 국교위의 국가 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연계 및 실행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의견임²⁾.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 한편,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과 관련한 개정안³⁾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위원 구성안 비교]

구 분	현행	강경숙 의원안	고민정 의원안	김문수 의원안	김영호 의원안	백승아 의원안	정을호 의원안
국 회	9	9	7	7	7	9	9
대통령	5	4	3	3	3	5	5
교육부(차관)	1	1	-	1	-	-	-
영유아 전문가	-	-	-	-	1	-	-
교육감 협의체	1	1	1	1	1	1	1
교원단체 ⁴⁾	2	3	3	2	3	3	3
대교협, 전문대교협	2	2	2	2	2	2	2
시도지사 협의체	1	1	1	1	1	1	1
교장 단체	-	-	1	-	-	-	-
교수 단체	-	-	2	-	2	-	-
교육 학회	-	-	1	-	1	-	-
학생·청년 단체	-	-	-	2	-	-	-
학부모 단체	-	-	-	2	-	-	-

2)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 확보 및 균형감 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 유지 의견이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현장 경험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현장의 교육전문가를 위원 자격 요건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유지 의견이며, 경북대학교 정보기획처는 국교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실행력, 그리고 사회적 대표성의 균형이 필수적인바 현행 유지 의견임.

3) 소위계류 - 의안번호 7355, 7956, 10780
미상정 - 의안번호 12837, 13335

4) 정을호의원안의 경우 교원단체 및 영유아보육교사단체

2. 교육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1항)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u>지정</u>)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 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u>교 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u>설치 등</u>) ① ----- ----- ----- <u>교 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 다.</u>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을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로 지정('25.3.28.)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로 지정('25.3.28.)하여 운영하고 있음.
- ☐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공립 연구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인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전담 조직과 인력 보유,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확보, 교육연구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5),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고, 내부적 정책 이해도를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부출연기관법”이라 한다)」에서는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인 연구기관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연구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부출연기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⁶⁾, 교육연구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및 재원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나, 기존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활용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 수행 가능하고⁷⁾,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차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⁸⁾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6) 현재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두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1. 8. 17.>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7) 경기도교육청

8) 대구광역시교육청

3.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교육연구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직 및 인력 구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